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군검찰 및 군사법경찰관리의
개인정보처리에 관한 규정
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국방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군검찰 및 군사법경찰관리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전자정부법」의 취지에 따라 군검찰 및 군사법경찰관리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업무를 전산화하고, 군사법기관 상호 간의 행정업무 수행시 및 군형사사법포털을 통하여 국민에 대한 군사법행정서비스를 제공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.

3. 주요내용

가. 군사법정보시스템의 도입(안 제2조)

군형사사법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각 군사법기관별 정보체계를 통합하여 수기형식의 업무부담을 줄이고, 군외 형사사법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형사사법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차세대 군사법정보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군검찰 및 군사법경찰관리가 위 시스템을 활용하여 업무를 전산화하고, 군사법기관 상호 간의 행정업무 수행시 및 군형사사법포털을 통하여 국민에 대한 군사법행정서비스를 제공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군검찰 및 군사법경찰관리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

군검찰 및 군사법경찰관리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1호 중 “「군사법원법」 제37조제3호”를 “「군사법원법」 제37조제1항제3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9호를 제10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. 「군검찰사무 운영규정」 제38조에 따라 형사사법정보를 군형사사법포털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업무 및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와 관련업무를 전자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
제2조제1항제10호(중전의 제9호) 중 “제8호까지”를 “제9호까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「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2조의2에 따라 형사사법정보를 군형사사법포털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업무 및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 업무를 전자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민감정보 등의 처리) ① 군 검사 및 군검찰단 소속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 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민 감정보,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, 같은 법 제24조 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,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	제2조(민감정보 등의 처리) ① 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「 <u>군사법원법</u> 」 제37조제3호 에 따른 다른 법령에 따라 군 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업무	1. 「 <u>군사법원법</u> 」 제37조제1항 <u>제3호</u> ----- ----- -----
2. ~ 8. (생략)	2. ~ 8. (현행과 같음)
<u><신설></u>	9. 「 <u>군검찰사무 운영규정</u> 」 제3 8조에 따라 형사사법정보를 <u>군형사사법포털을 통하여 종</u> <u>합적으로 제공하는 업무 및</u> <u>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</u> <u>와 관련업무를 전자적으로 수</u> <u>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</u>
9.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 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	10. ----- -- <u>제9호까지</u> ---

부수적으로 필요한 사무

② 군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,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, 같은 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,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1. ~ 3. (생략)

<신설>

② -----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「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2조의2에 따라 형사사법정보를 군형사사법포털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업무 및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 업무를 전자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방부 군사법정책담당관	
연 락 처	(02) 748 - 1658